

**Diversitas**

**Diversitas**

Libertas

Justitia

Veritas

et

**Diversitas**

07

딸들의 노래:  
삶과 시간을 꺾는 흑인 여성들의  
음악, 신화, 시

류아정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석사과정

39

미국법학으로의 산책:  
개인의 공간과 국가의 역할

정인영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사무관, 워싱턴주립대 로스쿨 박사과정(Ph.D.)

딸들의 노래:

삶과 시간을 꺾는  
흑인 여성들의  
음악, 신화, 시

## 류 아 정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석사과정

“미국에서 가장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은 흑인 여성이다. 미국에서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은 흑인 여성이다. 미국에서 가장 외면당하는 사람 또한 흑인 여성이다.”(말콤 X, 1962).

“그토록 많은 혐오를 겪고 살아남았으면서도 그것을 계속 견디며 살아가는 존재가 도대체 흑인 여성 말고 또 있을까? 이토록 맹렬한 적대감을 온몸으로 흡수하면서도 여전히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는 인간 존재가 또 있을까?”(오드리 로드, 1981).

흑인 여성들은 인종, 젠더, 계층의 위계에서 교차적으로 억압당한다. 2014년 기준 미국에서 실종된 흑인 여성은 약 64,000명으로, 해당 연도에 등록되어 있던 실종자 전체의 34%를 차지했다.<sup>1)</sup> 2006년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흑

---

1) Black and Missing Foundation, #BringBackOurGirls 해시태그 운동 참조.



촉발되었다. 따라서 포스트휴먼 사유를 선도하고 있는 세계적인 석학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와 여러 퀴어 학자들은 ‘퀴어’나 ‘사이보그’의 상상이 어떻게 흑인의 신체를 둘러싼 대상화와 비인간화의 역사를 통해 가능해졌는지, 우리의 ‘인간성’에 대한 사유가 어떻게 그들의 존재에 은연 중에 의지하고 있는지를 짚어낸다. 한편, 개인이 경험하는 억압은 그를 구성하는 여러 특성과 위계의 교차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획일화된 여성 경험’을 상정할 수는 없다고 하는 ‘상호교차성 이론(intersectionality)’과 ‘제3물결 페미니즘(third-wave feminism)’ 또한 흑인 페미니스트들의 열띤 논의에 빛을 지고 있다. 이외에도, 역사와 계보를 오래도록 부인당해온 흑인 여성들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노래하며 자신의 조각난 영혼을 신화의 장으로 만들거나, 자신의 비인간화되는 몸을 미래의 주인공으로 삼아 눈부신 예술을 실험하고 있다. 그들이 행하는 시공간, 몸, 그리고 집과 자유에 대한 끝없는 사유와 실험들이 분명 우리에게도 큰 영감을 주리라 믿으면서, 이들의 신화적 세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 ■ 흑인 여성들의 '뿌리 뽑힌' 위기

기억되는 것들의 세계, 그 기념비 사이사이의 큰 틈은 잊혀진 것들이 채우고 있다. 잊히기 싫은 자들, 해야 할 이야기를 하지 못한 이들은 지상에 남아, 자신을 발견한 누군가에게 끈적하게 달라붙는다. 물론 죽지 않아도 유명인 사람들도 있다. 태어날 때부터 유명이었거나,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사건으로 인해 갑자기 유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숨 쉬고 있는 우리 중에는 존재와 기억을 부정당하고, 온전한 인격과 삶을 인정받지 못하는 몸들이 있다. 기억 할 만한 위인들을 적고, 기득권의 성공 서사를 읊고, 규범적인 것들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 말하는 동안 '보잘 것 없어서' 잘 보이지 않던 자들과 그들의 이야기는 점차 볼 수 없는 것이 되어간다. 그렇게 누군가들은 유명이 된다. 끝없는 혐오와 폭력을 감내하는 동안 흑인 여성들은 말할 수 없고 보이지도 않는 사회적인 '유명'이 되어간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에 녹아들어 있는 수많은 다른 '유명들'을 감각한다.

“일부러 기억에서 지우고 잊은 후, 더 이상 그녀를 잃는 것은 불가능했다. 누구도 그녀를 갖지도, 찾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해질 만한 이야기가 아니야. 이것은 물려줄 만한 이야기가 아니야. 그렇게 그녀는 정교하게 잊혔다.”<sup>5)</sup>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의 역작 <Beloved (1987)>는 흑인 여성 세스(Seth)와 그의 주변인들을 잠식시키는 트라우마를 그려낸다. 대농장에서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해 ‘자유민’이 된 세스는, 어린 딸이 노예상에게 끌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손으로 딸을 죽이고 만다. 이후 세스에게는 덴버(Denver)라는 둘째 딸이 생기고 그를 자유민으로 키울 수 있게 되었지만, 세스는 노예제의 어떤 유산도 대물림하기 싫은 마음에 덴버에게 플랜테이션에서의 착취와 비인간적 대우, 성폭행 피해, 딸을 죽여야 했던 괴로운 경험에 대해 일절 말하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죽은 첫 딸의 혼령이 ‘빌러비드(Beloved)’라는 이름의 초인간적인 존재로 돌아와 세스의 집에 함께 살게 된다. 세스는 계속해서 빌러비드로 표상되는 체화된 기억에 현재의 삶을 압도당하고, 덴버는 빌러비드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에게 어머니를 빼앗기고 만다. 결국 덴버는 빌러비드를 달래기 위해 제대로

---

5) Morrison, T. (1987). *Beloved*. New York: Vintage Books.

들어보지도 못한 어머니의 삶을 조각조각 끼워 맞추고 때로는 창조해가며 어머니의 불완전한 이야기를 대리하는 유일한 화자가 되며, 그와 같은 말하기의 행위가 어머니를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에 있어 필수적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빌러비드와 덴버는 서로에게 “나를 잊지 않을 거지? 네 얼굴은 내 거야. 너는 내 자매고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얼굴이야. 너는 나고, 나는 다시 너를 찾았어. 너는 나에게 돌아왔지”라며 뒤섞인 자아와 목소리로 서로에게 말을 걸고, 세스를 살리기 위해 마을의 흑인 여성들은 혼자 감내해온 고통스러운 비밀을 하나씩 털어놓으며 일종의 집단적인 곳을 행한다. 이는 세스를 일시적으로 살려주지만, 소설의 결말은 빌러비드가 여전히 떠나지 않고 이 여성들의 삶과 집안에 영원히 도사리고 있을 것임을 암시한다. 모순적이게도, 빌러비드를 희석하고 잊기 위해서는 오로지 계속해서 그를 함께 기억하고 말하는 방법 뿐이다. 과거와 현재, 기억과 환상과 실재가 구분없이 뒤섞이는 이 혼란 속에서, 모든 기억을 지우지도 말하지도 못한 채 트라우마에 갇혀버린 세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노예제에 맞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끈질기게 좇고 말해냄으로써 모두를 지켜야만 하는 덴버의 처지는 소설 속 은유일 뿐 아니라 흑인 여성들이 실제로 공유하는 핵심적인 고통을 집약한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끈질기게 좇으며 세스를 이해하고 자신을 둘러싼 상

황들을 소화하려 하는 덴버처럼, 책 <Lose Your Mother (2007)><sup>6)</sup>에서 미국의 흑인 비평학자 사이디아 하트만(Saidiya Hartman) 또한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집요하게 아카이브를 뒤져본다. 그리고 흑인들의 흔적이 구조적으로뿐 아니라 개인의 의지로도 철저하게 삭제되어 왔음을 절감한다. 노예제를 탈출한 이들과 자신의 과거 기록과 사진을 제거해 수치와 고통의 기억을 지우고자 했기 때문이다. 한편, 도서관을 채운 수많은 미국의 ‘공식’ 노예 아카이브들은 실제 노예제를 이해하기에 너무나도 협소했다. 두꺼운 노예 역사서들은 거래된 인원 수, 그들의 가격, 무역 경로나 판매자, 수령인 정보 등 ‘팩트’로 가득했지만 정작 거래된 사람들의 이름, 지난 삶과 가족 관계, 거래 이후의 족적 등에 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나는 훼손된 자들, 파괴된 사회들의 흔적을 좇았다. 목록을 채운 각 물건에서 나는 무덤을 읽었다. 노예 아카이브를 읽는 것은 공동묘지에 입장하는 것과 같은 경험이었다”고 하트만은 말한다.

결국 하트만은 해답을 찾기 위해 노예 무역의 출발지였던 서아프리카에서 일년을 여행한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노예의 역사는 지워지고, 다른 부족

---

6) Hartman, S. V. (2007). *Lose Your Mother: A Journey Along the Atlantic Slave Route*.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과의 전투에서 승리해 상대를 노예로 팔아 넘겼거나, 백인들과 싸워 노예제를 빗겨간 아프리카 민족들의 ‘영광스런 역사’만이 남았음을 알게 된다. 그곳에 ‘흑인 공동의’ 유대는 없으며, 지구상 어디에서도 자신의 계보는 발굴될 수 없음을 깨달은 하트만은 마음의 열병을 앓는다. 이로부터, 흑인 디아스포라(diaspora) 인구에게는 ‘역사’라고 일컬어지는 기록을 재구성하는 것도, 다시 쓰기를 통해 현재를 규명하는 작업에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이 드러난다. 이에 저자는 자신의 계보가 공백으로 표상되는 ‘도망자들의 역사(fugitive history)’ 그 자체라고 생각하게 된다. 어느 시공간에도 설 자리가 없는, 지워진 목소리와 기록되지 않은 삶들이 만드는 공백의 역사를 상상하면서, 그는 존재하지 않는 집으로 ‘돌아가려는’ 시도가 아닌, 새로운 길과 집을 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

## 딸의 목소리로 어머니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우리의 어머니와 할머니들은 아직 적힌 적 없는 음악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다렸다. 그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알 수 없는 것이 알 수 있는 것으로 태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영혼에 대한 규명이 자신들의 사후에나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같다. 그러므로 그들은 당장에 갈 수 있는 곳이나 향할 곳 없이 아주 느리게 서성이곤 했고, 남자들은 이러한 어머니들의 상태와 이야기로부터 아무 의미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앨리스 워커, 1983).”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활동가이자 시인이었던 오드리 로드(Audre Lorde) 또한 일찍이 “주인의 도구로는 결코 주인의 집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말을 통해, 억압적인 서사와 구획으로 점철된 권력의 장에 그쳐 흑인 여성을 더하는 것만으로 자유를 획득할 수는 없음을 피력한 바 있다. 대신, 그는 흑인들이 자유로워지기 위해 새로운 ‘시’와 ‘신화’를 구축해낼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의 출발점은 여성 개인의 풍부한 감각과 느낌을 긍정하고 재해석하는 것이다. 로드는 “시를 통해 이름도 형식도 없이, 미처 태어나지 못한



다채로운 욕망에 대해 묘사했다. 그리고 그것이 “창백한 백인”들이 단순히 ‘듣고’ 적어내리는 합리적 분석으로는 온전히 통역할 수 없는 근원적인 지식의 장임을 표현한 바 있다. 끊임없이 쪼개지고 부인당하는 상황에서도 느낌과 감정만큼은 나의 것이며, 나의 삶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도 음악은 흑인 여성들이 자신의 분절된 자아와 몸을 표현하고, 유명들을 보듬는 주된 장이다.



Solange - Weary

디아스포라의 딸들은 지치고 소진되었다. “Weary” (2016)라는 곡에서 가수 솔란지(Solange)는 자신이 “세상에 한 줌의 흔적도 남기지 못할” 것이라고 느껴 무력해 한

다. 가치있는 인간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한 주인권을 빼앗겨온 그는 노래 전체에 걸쳐 “난 내 몸을 찾으러 갈게, 곧 돌아올 거야. 나는 내 명예를 찾으러 갈게, 곧 돌아올 거야”를 끊임없이 되풀이해 부르며 잃어버린 주체성을 갈망한다. 그의 조각난 목소리는 여러 겹의 선율로 흩어지기도 뭉쳐지기도 하면서 시공간의 저편으로 떠나는 듯하다. 노래가 끝날 즈음, 말할 수 없게 된 화자의 목소리는 웅얼거림에 가까운 소리만을 남겨둔다. 이베이(Ibeyi) 자매 또한 “Ghost”(2015)라는 곡에서 자신들의 세계를 메우는 유명들에 대해 노래하고, 그 유명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단어와 소리, 노래를 만들어낸다고 말한다. 음악의 비물질적이고 휘발적인

특성은 이처럼 유명이 되고 마는 흑인 여성들의 경험을 구현하는 동시에, 물질 세계의 그 어느 시공간도 점유하고 있지 못한 흑인 여성 서사를 모아 시간을 초월한 주체성과 계보를 구축할 수 있게끔 해주기도 한다.

뿌리 뽑힌 딸들의 몸은 이윽고 자신과 트라우마를 공유하는 어머니나 자매들의 영혼으로 채워진다. 이 시작점은 니나 시몬(Nina Simone)으로부터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그는 수많은 곡을 통해 흑인 여성의 경험과 저항 의식을 담아냈는데, 이 중 주목하고 싶은 곡은 1970년대부터 흑인 페미니스트들의 주제가가 된 “Four Women”(1966)이다. 이 곡에서 그는 1절부터 4절에 걸쳐 Aunt Sarah, Sephronia, Sweet Thing, Peaches라는 네 여성의 이야기를 1인칭으로 소개한다. 이들은 피부색과 머릿결, 세대에 따라 노예가 되거나 성매매를 하기도 하고, 백인 남성에 의한 성폭행으로 태어나기도, 어머니의 트라우마를 흡수해 감당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기도 한다. 시몬은 흑인 여성들에게 대물림 되는 고통과 억압에 이들이 다르게 반응하는 방식을 그려내고, 설사 편견대로 “분노하는 비극적인 흑인 여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감정에 역사 문화적 맥락을 부여하면서 흑인 여성상에 다채로운 입체감을 준다. 한편, 해당 곡의 1절부터 3절은 클라이막스 없이 돌립 노래로 진행되며, “내 이름은 사라 이모야. 내 이름은 사라 이모야”와 같은 식으로 해당 절의 주인공 이름을 반복적으로 읊조리며 마무리되는데, 마지막 인물만은 다르다. Peaches는 앞

선 여성들처럼 직접적이진 않아도 분명 노예제의 억압을 감각하고 있는 존재로, 분노와 광기를 담아 자신의 이름을 외친다. 실제로 이 Peaches의 이름을 외치는 순간이 노래의 클라이막스이자 종결이며, 다른 인물들과 달리 시몬은 그의 이름을 단 한 번 부르짖는다. 더 이상 힘없이 사그라들지 않고, “내 이름은 PEACHES야!”라고 소리치는 것은, 끊임없는 유령 생활과 몸에 켜켜이 쌓여온 트라우마를 청산하고자 하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기를 요구하는 주체적인 흑인 여성의 대두를 선언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Nina Simone - Four Women (Berklee BLM의 커버)

나 시몬은 어려서부터 꾸준히 피아노 천재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의 꿈은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클래식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었으나 왜인지 음악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 경험에 대해 니나 시몬 본인을 포함해 평론가들은 분명 그가 흑인이라는 점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후 그는 돈을 벌기 위해 바에서 피아노를 치다가, 흑인 여자는 노래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노래까지 하게 된다. 이러한 시몬의 개인사를 고려했을 때, “Four Women”의 수많은 리메이크 버전 중에서도 버클리 음악대학 학생들이 발표한 커버(2016)는 유독 의미 있게 느껴진다. 해당 커버에서 니나 시몬의 피부와 목소리를 통해 부활했던 네 여성은 그 다음 세대 여성들의 목소리와 연주를 통해 다시 한 번 살아난다. 니나 시몬이 잊세

대 흑인 여성들이 지니지 못했던 발화 권력을 활용해 흑인 노예와 성폭행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풀어낼 예술적 공간을 창조해냈듯, 이제 이 흑인 여학생들은 나나 시몬의 목소리를 흡수하고 되살려, 그가 갈 수 없었던 음악 대학에서 그의 작품을 노래한다. 선배들의 투쟁의 결과로 더 많은 자리를 얻어냈고 각자의 자리에서 활개하는 흑인 여성들이 이처럼 계속해서 트라우마의 이야기 (재)생산하는 것은 개개인을 짓누르던 억압을 집단적인 기억으로 재구성해냄으로써 살아있는 자들에게 언어와 계보를 줄 뿐 아니라, 이전의 여성들을 그들이 누리지 못한 특정한 자유와 권력의 서사, 새로운 담론장 속에 재배치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달래고 구원한다.



Jamila Woods -  
Blk Girl Soldier

따라서 디아스포라의 딸들은 ‘어머니’들의 기억을 잊지 않고 일종의 치유제, 선물, 혹은 의무로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전한다. “Blk Girl Soldier”(2016)에서 자밀라 우즈(Jamila Woods)는 “아무도 우리를 위해주지 않아”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아”와 같은 노래 가사를 반복하고, 이때 그의 목소리를 뒷받침하는 여러 겹의 코러스는 마치 그가 사람들과 유명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대리해서 말한다는 느낌이 들도록 한다. “지난 세기와 지난 주에 우리 자매들”이 겪은 일을 보라고 외치는 그는 자신의 몸과 시공간의 축을 뛰어넘어 흑인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겪어온 고통을 체감하는 모습

이며, 청자 또한 그 현실을 기억하기를 요구한다. 더욱 직접적으로, 노래 후반부에서는 1분 가량이 Rosa, Ella, Audre, Angela, Assata 등의 흑인 여성 운동가들을 호명하고 기억하는 데에 사용된다. 이처럼 선배들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자신의 예술 속에 직조해가며, 디아스포라의 딸들은 자신들의 망가진 조각을 남을 위해 나누고 남의 기억을 자신의 이야기로 소유하는 법을 배운다. 아름다운 공동의 예술을 통해 그들은 생존하고, 자신을 넘어 온전하게 채워진다.

이와 같이 공동체적 기억과 계보를 만들어내려는 시도가 가장 두드러진 작품은 비욘세(Beyonce)의 <Lemonade (2016)> 앨범이다. 장장 1시간 30분 길이의 “Visual Album”에서 그는 흑인 여성으로서 경험한 개인적이고 내밀한 상처와 고뇌에 대해 진술하고(“Hold Up”, “Sorry”), 흑인을 억압하는 구조와 차별로 인해 생겨난 죽음들을 추모하기도 한다(“Formation”). 그리고 개인적인 고통을 해소하는 작업과 흑인 억압의 구조를 해체하며 디아스포라 서사를 구축하는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 이때 ‘레모네이드’는 회복의 핵심적인 은유가 된다. 트랙 “All Night”에서는 어린 시절 비욘세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만들어주던 레모네이드 레시피가 소개되면서 흑인 커뮤니티의 평화로운 사랑과 애정, 보살핌 등 긍정적인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재현된다. 더 나아가, “Freedom” 트랙에서는 남편 Jay Z의 할머니가 90세 생일 파티에서



Beyonce - Forward



Beyonce - All Night

“인생은 나에게 수많은 레몬을 주었지만, 나는 그걸 레모네이드로 만들어왔어”라고 말하는 장면을 통해 이 은유가 더욱 직접적인 생존과도 연결된다. 이처럼 레모네이드는 고통을 버텨내고 어떻게든 삶을 꾸려온 흑인 여성들의 능력과 의지 그 자체를 상징하며, 이 의지가 비욘세가 축복하는 디아스포라 문화의 핵심이다.

실제로 해당 앨범에서 비욘세는 노예제 이전의 먼 과거로 돌아가 흑인 공통의 기원을 추적하기보다는 서양 땅에서 300년 간 적응하고 생존한 디아스포라의 유산 자체를 끌어모으는 식으로 자신이 속한 역사문화적 지형을 구성한다. 그는 뉴올리언스(New Orleans)를 포함한 미국 남서부의 자연부터 그곳의 독특한 문화와 의복, 식문화, 음악을 소환하면서, 현재도 매일같이 이

어지고 있는 빛나는 적응의 역사를 만든다. 이처럼 역동적인 생존 의지와 그 흔적들 자체를 계보로 인정할 때, 노예제의 영향을 받은 흑인들의 비균질적이고 다채로운 삶의 방식들이 모두 포함될 뿐 아니라, 현재 미국에 새로이 정착하고 있는 아프리카 이민자 작가와 예술인들의 작업물까지도 같은 계보 안에 엮을 수 있게 된다. 비욘세는 자신의 시청각적 예술을 통해 디아스포라의 자녀들을 위한 새로운 ‘집’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하트만은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언제쯤 과거의 이야기가 끝나 미래를 기획할 수 있는 삶이 시작될지를 절박하게 질문한다. 수많은 이들이 낡은 권력 구도를 재생산하고 있는 복잡한 담론장에서, 묵혀온 이야기를 털어내는 것만으로 세상을 재구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흑인에게 영겨 붙은 죽음과 폭력의 이미지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 위에 급진적인 자유와 공존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 가능할까? 흑인과 관련된 어떠한 과거와 현재의 상상도 무거운 책임을 동반하는 상황 속에서, 현재나 과거를 경유하지 않고 곧장 ‘미래’부터 전유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 현재의 인종적인 문제들이 필연적으로 기입되지 않은 ‘미래’를 주된 배경으로 삼아, 흑인을 중심에 둔 신화를 창조하고 탐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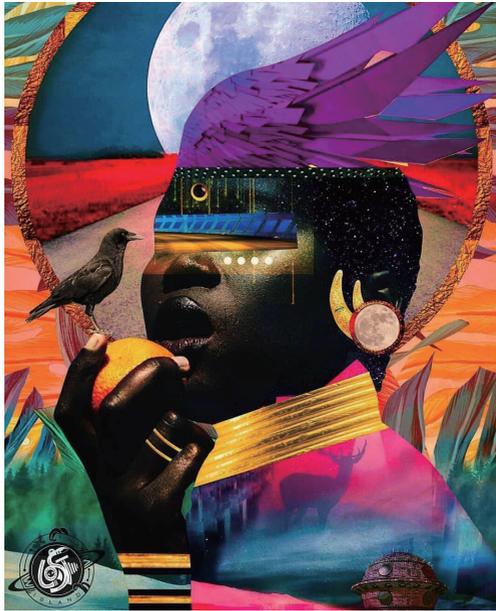
■  
미래의 시를 쓰기:  
아프로퓨처리즘(Afrofuturism)

흑인 여성들의 시와 신화를 이야기하면서 ‘아프로퓨처리즘(Afrofuturism)’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아프로퓨처리즘은 아프리카계 디아스포라 인구의 문화와 과학기술의 교차점을 탐구하려는 예술적, 학문적 실험 및 사회적 운동 전반을 일컫는다. 보통 버락 오바마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해인 2009년을 2세대 아프로퓨처리즘(Afrofuturism 2.0)의 태동기로 구분하여 정의하는데, 이때부터는 흑인의 시선으로 21세기 과학기술 시대의 중심 의제들을 비평하면서, 과학기술에 영혼성(spirituality), 젠더 유동성(gender fluidity), 포스트휴먼적(posthuman) 상상을 가미하고 대안적 역사를 구축해보려는 실험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행성과 우주인이 날아다니는 도자 캣(Doja Cat)의 미래도시적 뮤직비디오나, 광활한 자연 지형에 놓인 세련된 흑인 여성들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솔란지(Solange)의 앨범 컨셉을 포함해 이제는 수많은 흑인 예술가들의 예술에 녹아든 아프로퓨처리즘은 급진적인 정치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아프로퓨처리즘은 흑인들을 압도하는 비인간성, 이방인성, 외계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영어로 alien은 이방인 혹은 외계인을 의미한다. 실제로 외계 생명체들을 ‘인류’와 대비되는 적으로 가정해 전쟁을 벌이거나 정복하겠다는 SF(science fiction) 서사는, 과거에 흑인들을 정복해 노예로 삼았고 현재도 이들을 영구적인 외부자로 취급하고 있는 백인 남성의 제국주의적인 관점을 그대로 투영한다. 한편, SF 중에서 인류 멸망이나 기후 위기 등을 상정하는 ‘아포칼립스(apocalypse)’ 장르 또한 일부 약자들에게는 이미 도래한 현실이다. 예컨대, 탈식민주의 학자들은 식민 지배를 당하는 민족에게는 침략과 복속을 당하는 순간이 이미 역사의 종말이며, 자신이 알고 사랑해온 모든 세계와 삶의 방식을 손실하는 아포칼립스의 경험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흑인들의 삶은 이미 ‘포스트 아포칼립스(post-apocalypse)’의 생존 서사다. 더 나아가,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의 말처럼 인간과 기술이 분리불가능한 복합체로서 생존하는 사이보그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할 때, 기술과 문화가 함께 기입당하는 삶을 경험한 유색인종 여성이야말로 사이보그 주체 그 자체일지 모른다.<sup>8)</sup>

---

8) Haraway, D. (1991). *Simians, Cyborgs and Women: The Reinvention of Nature*. New York: Routledge. 149-181.



콜라주: © Kaylan Michel (Lost In The Island), "Pegasus", Canada, 2019

이러한 맥락에서 아프로퓨처리리스트들은 이미 사회적 외계인이며 사이보그나 다름없는 흑인의 상태를 기반으로 흑인을 미래의 주체로서 재해석해낸다. 그리고 ‘인간’의 관점에서 로봇이나 외계인 등을 ‘타자’로 삼기보다는, 오히려 로봇이나 외계인에게 이입하며, 비인간(nonhuman)으로서의 경험을 근간으로 한 다양한 연결과 유대를 상상한다. 이를테면 SF의 대가 옥타비아 버

틀러(Octavia Butler)는 인간과 외계인의 상호 호혜와 기생 생물에 대한 애증, 인간이 외계인에게 식민지배를 당하지만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고 적응하는 미래 등을 다채롭게 상상하며 흑인 여성의 관점으로 SF의 세계를 넓힌 바 있다. 게다가 <Kindred (2003)><sup>9)</sup>에서는 과거로 가서 자신이 몰랐던 조상들의 경험을 알게 되고 노예됨의 경험을 체화하는 현대 흑인 여성의 이야기를 그려냄으로써, 시간이 흐르는 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트라우마의 역사에 갇혀 있는 디아스포라 인구의 경험을 구현하고 흑인 여성 예술인들이 계속 시도하던 역사와의 연결이나 계보 추적을 SF에서 도모하기도 했다.

한편, 이러한 시도가 이미지적인 실험을 위주로 전개된다는 점 또한 유의미하다. 흑인의 신체는 언제나 열등하게 비추어지고 관음, 소비, 욕망의 대상이 되어왔다. 흑인이 경험하는 실상은 지워지면서도 그 몸은 초가시화된 것이다. 이에 하트만은 흑인 신체를 ‘대체 가능성(fungibility)’ 개념으로 정의하며, 그것이 철저히 상품화되어 타자의 가치, 관념, 욕구를 투영할 수 있는 텅빈 관념적 장소로서 기능해왔음을 비판한다.<sup>10)</sup> 이러한 맥락에서, 흑인들이 자신의

---

9) Butler, O. (2003). *Kindred*. Boston: Beacon Press.

10) Hartman, S. (1997). *Scenes of Subjection: Terror, Slavery, and Self-Making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문과 재현 방식을 온전히 통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저항이다. 아프로퓨처리즘에서 흑인은 미래의 모습은 물론이고 그 안에서 흑인이 취할 역할과 시각적인 모습까지도 마음대로 실험한다. 서양 백인들의 진화론적 관점에서 유색 인종은 과거의 산물이자 원시적이고 미개한 존재, ‘문화’와 대비되는 자연적인 존재로 그려졌으나, 아프로퓨처리즘 미학에서는 세련되고 미래적인 흑인 문화와 아프리카의 고전 문화가 뒤섞여 자연 속에 공존하는 모습이 등장하곤 한다. 이를 통해 그들은 흑인 자문화의 재현 방식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고, 자유와 공존의 다양한 모습을 구현한다.

이처럼 아프로퓨처리즘은 기술의 주인이 된 흑인, 미래의 핵심적인 주체가 된 흑인, 평화로운 흑인을 그려냄으로써 ‘표준 인간’의 계보, ‘SF와 미래물’의 계보, 그리고 ‘흑인’ 자체에 대한 이미지와 정의를 모두 전복한다. 게다가 아프로퓨처리즘은 ‘미래’를 이야기하면서도 그곳을 ‘과거’의 역사와 문화가 현현하게 살아날 수 있는 자유로운 세계로 사유하고, 이러한 재현을 통해 흑인의 모습을 상상하는 ‘현재’의 담론 지형과 방향성까지 완전히 바꾸어낸다. 이곳에서 시간은 선형적이지 않고, 미래는 과거와 현재의 관성으로 그저 닥쳐올 운명이 아니다. 오히려, 아프로퓨처리즘을 만난 시간은 디아스포라 인구가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총체적인 개혁과 창조의 장이 된다.

## 안드로이드 혁명과 퀴어 유토피아?

오늘날 아프로퓨처리즘을 통해 사회적 구획을 다양하게 넘나들고 뒤섞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가수 자넬 모네(Janelle Monae)를 꼽을 수 있다. 그는 2007년, 첫 미니 앨범 <Metropolis>에서부터 안드로이드 자아 ‘신디 메이 웨더(Cindi Mayweather)’를 내세워 활동했다. 1집 정규앨범 <ArchAndroid



Janelle Monae - Metropolis: The Chase Suite



Janelle Monae - Dirty Computer

(2010)>에서 그는 ‘감히’ 인간을 사랑한 죄로 해체당할 위기에 놓인 후, 안드로이드의 2등 시민 지위를 전복하려는 메시아적 인물을 연기한다. 이후 2013년 앨범 <Electric Lady>가 나왔을 때, 그는 수록곡 “Q.U.E.E.N”이 모 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노래이며, Q가 퀴어(queer community), U가 불가 축천민(untouchables), E가 이민자(emigrants), 두번째 E는 파문당한 자들(excommunicated), N은 흑인(‘negroid’)을 의미하는 약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는 “시간을 여행하는 모든 역사 속 반역자들”이 산 채로 박제되어 있다가 음악을 통해 해방되어 박물관을 탈출하는 내용이다. 노래에는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뜯어고쳐야 할까?” “우리를 그저 공식에 더한다고 해서 평등해질 수는 없어. 영화를 쓰는 사람이 이 각본과 후속작을 지배해” 등의 가사가 등장해, 사회적 차별과 위계가 모두 잘못된 “프로그래밍” 때문이며,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각본을 써야함을 함의한다. 이는 “주인의 도구로는 결코 주인의 집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로드의 문제의식과도 공명한다. 한편, “나를 분류해봐, 나는 모든 구획을 거부해”라는 가사는 모



Janelle Monáe -  
Dirty Computer

네가 안드로이드 자아로 활동해온 이유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리고 2018년, <Dirty Computer> 앨범을 통해 자넬 모네의 미래적 세계관은 정점을 찍었다. 해당 앨범을 발매 하면서 자넬 모네는 범성애자(pansexual)로서 커밍아웃 했

고, 모든 수록곡이 포함된 48분 가량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뮤직비디오의 오프닝 나레이션은 “그들은 우리를 컴퓨터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대청소가 시작되었다. 생김새가 다른 것은 더러운 것이었다. 그들이 지시하는 방식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었다. 그 어떤 형태의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도 더러운 것이었다”고 말한다. 그후 어딘가에 갇힌 자넬 모네가 등장하며, 그에게 의문의 목소리가 ‘제인57821’이라는 이름을 주고, 곧이어 “나는 더러운 컴퓨터다. 나는 청소될 준비가 되었다”를 따라 말하게 한다. 이에 대해 거부감과 고통을 느끼는 모네를, 이명명의 관리인들은 그의 기억 데이터를 하나씩 지움으로써 교화하려 한다. 이때, ‘기억’으로서 앨범 속 곡들이 하나씩 소개된다.

감시와 통제의 전체주의 세계는 흔한 디스토피아적 모티프지만, 누군가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그의 특별한 구석을 모두 ‘버그’로 치부해 지우는 시스템은 흑인, 퀴어, 여성의 존재를 모두 납작하게 일축하는 가부장적 사회의 양상과도 닮아있다. 그러므로 자넬 모네의 흑인 페미니스트, 범성애적 퀴어, 그리고 아프로퓨처리즘적 사이보그로서의 정체성은 골고루 버무려져 억압적 통치 구조로부터 저항하는 무기가 된다. 우선 마틴 루터킹의 “I have a dream” 연설 오디오, 아프리카 북소리, 미국 내 흑인 디아스포라 인구의 문화 등이 세련된 형태로 뒤섞여 미래적인 스타일로서 등장한다. 자넬 모네와

그의 실제 애인인 테사 톰슨(Tessa Thompson), 그리고 그들의 ‘흑인 자매들’이 연기하는 사이보그들이 가장 자주 등장하는데, 극중에서도 이들은 시스템의 당사자이면서도 외부자로서, 자유를 만끽하지만 통제와 감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일상을 살아간다. 한편, 이전 앨범을 통해 쌓은 아프로퓨처리즘적 미학과 사이보그 자아가 배경으로 깔리는 동안, 흥미롭게도 서사의 중심은 ‘감정’이 된다.

해당 영상은 영화를 의미하는 motion picture가 아닌, “감정(emotion)” picture로 이름 붙였다. 미래적인 시공간 속에 놓인 아프로펑크(Afro-punk) 사이보그 주인공은 계속해서 자신의 감각과 감정에 대해 말한다. 그는 2번 트랙 “Take a Byte”에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지만, 너의 마음을 가릴 순 없어”라며 당위나 체계와는 무관하게 자신을 솔직하게 사랑해주기를 요구한다. “I Like That” 트랙에서 그는 “난 어느 때는 미스터 리고, 어느 때는 자유야. 걸어 다니는 모순인데, 뭐 나는 팩트이자 픽션인가 보지”와 같이 끊임없이 자신의 모순과 복잡성에 대해 노래하고, 그 알 수 없는 상태 자체를 충실하게 긍정한다. 이처럼 “프로그램” 대신 긍정적인 마음과 사랑을 따라간 결과, 자넬 모네와 함께 파티를 하고, 경찰을 피하는 이들에게는 ‘흑인 자매들’ 뿐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성소수자들도 포함되며, 이들 모두가 모여 평화와 자유를 표상하는 지형을 이룬다. 자넬 모네 개인의 교차적 정체

성을 통해, 그가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한 아프로퓨처리즘적 유토피아는 저마다 “오염된 컴퓨터”인 소수자들이 모두 자연스럽게, 긍정적이고, 자유롭고, 사랑스럽게 날뛰 수 있는 해방의 세계가 된다.

이와 같이 퀴어-페미니즘적 색채를 더한 자넬 모네의 아프로퓨처리즘 세계관은 오드리 로드가 상상한 흑인 페미니즘의 이상향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시’와 ‘신화’ 창조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로드는 이를 위한 “삶의 힘과 삶의 원천”으로 ‘성애(erotic)’를 꼽는다. 여성의 억압은 곧 성애의 타락과 왜곡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로드의 설명을 통해, 그가 성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창조적 생의 감각”을 하필 ‘성애’라는 단어로 호명하는 이유는 여성에 대한 대표적인 억압 기제가 성적인 억압과 대상화이기 때문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자유롭게 감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욕의 가치는 그 자체로 억압을 대표하며, 진실로부터 가장 멀다. 그러므로 로드는 여성이 자신의 몸과 감각을 깊이 느끼는 것을 긍정하면서, 더 나아가 매순간 일상적인 삶과 세계 또한 깊고 풍부하게 감각하기를 제안한다. 자신의 좋고 싫은 감정과 느낌에 이름을 붙이고, 좋은 느낌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그 기쁨을 남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억압을 수용하는 삶과는 대척점에 있는 바람직한 삶의 방식이다. 이처럼 ‘성애’적 자원을 바탕으로 한 시쓰기를 통해 흑인 여성의 삶이 비로소 통합될 수 있고, 그 통합이 타인과 연결되기 위한 조건일 때,

자넷 모네의 작업물은 흑인 여성의 해방을 위해 로드가 제기한 비전을 시청각적으로 구현해낸 것이나 다름없다.

한편, 제인의 기억/노래를 삭제하는 관리자는 이것이 엄밀히 말해 ‘기억’인지 혼란스러워한다. 각 ‘기억’은 실제 과거의 경험, 존재한 적 없었던 미래에 대한 상상과 꿈, 그리고 예술적 창조물들이 뒤섞인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 또한 선형적인 시간 관념에 도전할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기억과 실존하는 역사, 집단적이고 문화적인 상상력 간의 경계를 허물어낸다. ‘치료’를 받은 후 제인에게 지도사 ‘메리아플53’이 배정되는데, 그는 일전에 잡혀가 이미 세뇌를 당한 제인의 애인 젠(Zen)이다. 제인은 젠을 만날 때마다 그가 잊어버린 추억을 하나씩 말해준다. 결국 뮤직비디오의 말미에 제인은 기억을 전부 삭제당하지만, 엔딩 장면에서 제인과 젠이 함께 탈출하는 모습은 젠이 다시 제인에게 기억을 나누어주었을 것임을 알게 해준다. 이때, 제인과 젠 모두가 자신이 접근할 수 없는 과거와 상실이 있는 상황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기억’과 ‘자아’를 (되)찾는 모습이다. ‘공백’의 역사 속에서 타인의 삶을 대리해서 말하거나 서로가 서로의 가치를 기억하고 증명하는 존재가 되어주는 것은 다른 흑인 여성들의 음악 예술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어져오던 전략이다. 그 계보를 이어, 미래로 향하는 자넷 모네의 작품에서도 ‘기억’은 개인을 뛰어넘는 집단적인 창조물이고, 그것은 개인을 지킬 뿐 아니라 모두를 위한 해방의 단초

가 된다.

아프로퓨처리즘의 세계관은 사회적인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비전과 긍정적인 상상력을 제공해주면서, 현실의 위계나 정체성 구획, 그리고 사회경제적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통합적 주체성 형성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급진적이다. 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비인간성의 경험을 어떻게든 소화해내어야 하는 흑인들의 극단적인 곤경에 의존한 상상력이기도 하며, 그런 측면에서는 ‘유령’들을 끌어 모아 소실된 역사를 메우고 자신의 자아를 구축해온 흑인 여성들의 다른 창조 작업과도 끈끈하게 맞물려있다. 이처럼 흑인 여성들은 계속해서 스스로의 존재와 삶에 대해 급진적으로 사유하면서 개인을 넘어선 연대의 삶과 예술을 구축하고 있다. 오랜 디아스포라와 노예제, 비인간화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애도와 이해를 위해 그들이 초월적인 시공간에 구축해낸 세계는 분명 그들을 이전보다 살 만하게끔 만들어내고 있다. 놀라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흑인 여성들의 다층적이고 열린 실험이 점차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기대한다. ❄️

미국법학으로의 산책:  
개인의 공간과  
국가의 역할

## 정인영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사무관, 워싱턴주립대 로스쿨 박사과정(Ph.D.)

### 플로리다 건물 붕괴 현장에 나타난 2명의 시장(Mayor)

며칠 전 플로리다 서프사이드(Surfside) 시에서 한 콘도미니엄 건물이 무너져서 6월 27일 현재 150명이 실종되었고, 5명이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2021년 6월 26일자 뉴욕타임스 기사<sup>1)</sup>를 보면, 서프사이드 시는 이미 3년 전에 40년이 소요된 건물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점검했었는데, 당시 엔지니어가 건물에 금이 가고 누수가 발생하는 등의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을 발견, 건물 운영자와 시 당국에 즉각 수십억 원을 들여 정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보고 했다고 합니다.

---

1) Baker, M., Singhvi, A., & Mazzei, P. (2021, June 26). Collapsed Building Near Miami Had Serious Concrete Damage.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www.nytimes.com>

이에 대해 Charles W. Burkett 시장(Mayor of Surfside)은 “2018년에 보고서를 수령한 후 어떤 후속조치를 취했는지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다소 부실한 답변을 하였고, 해당 지역에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던 Daniella Levine Cava 카운티 시장(Mayor of Miami-Dade County)은 2018년 보고서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Cava 시장은 카운티 내 40년 이상된 건물에 대해 1개월 검사(30-day audit)를 통해 전면 재보수를 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시들(cities)도 각각 자신의 관할 내에서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저는 미국의 지방정부구조가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은 왜 시장이 두 명일까요?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서프사이드 시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마이애미-데이드(Miami-Dade) 카운티에 있었을까요? 미국에서 살아온 짬을 동원해 추측건대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내에 서프사이드 시가 소재해 있고, 건물 안전성 관리감독은 시의 고유권한이지만 소방사무는 카운티가 수행하고 있어 구조작업을 카운티가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18,000개의 지역 경찰조직이 있는 미국

미국의 정부조직을 접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워싱턴 주의 킹 카운티(King County) 안에는 시애틀(City of Seattle), 벨뷰(City of Bellevue), 그리고 빌 게이츠 등 유력 인사가 거주하는 메디나(City of Medina) 등이 위치해있는데, 시애틀에는 72만 명, 메디나에는 3천 명이 살고 있어 규모의 격차가 매우 큽니다. 도시는 보통 1개 카운티 안에 소재하지만, 2개 카운티에 걸쳐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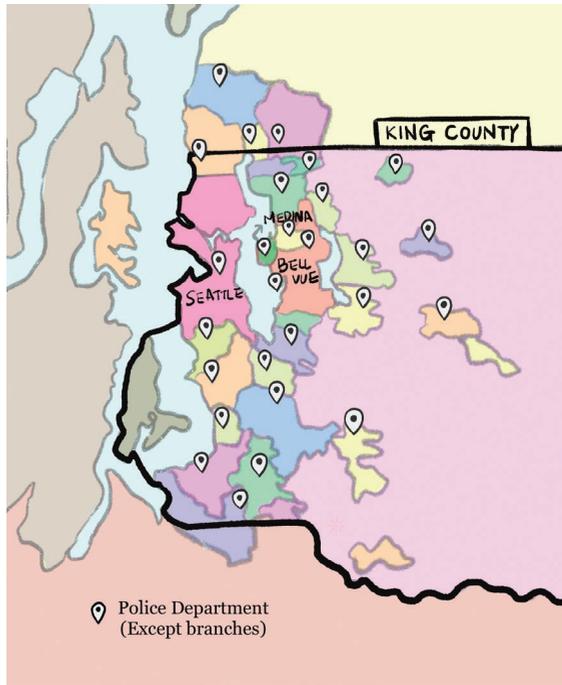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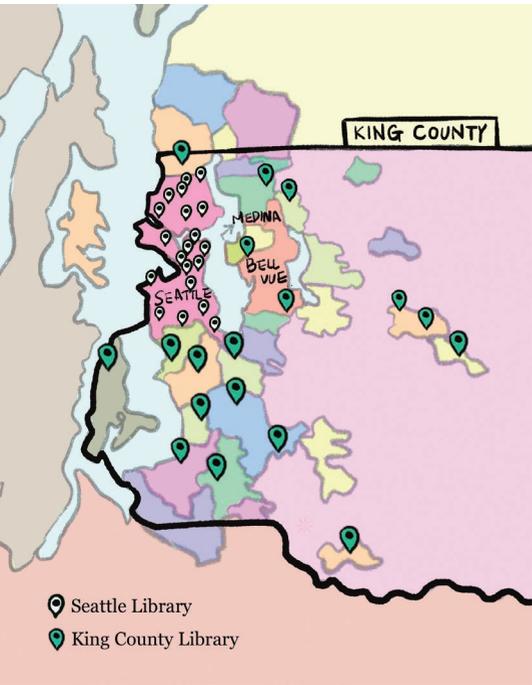
킹 카운티는 주 정부기관으로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킹 카운티 보건국’에서 마스크 착용, 집합금지, 백신 자격요건 등을 정하고, 버스와 도시철도는 ‘킹 카운티 메트로’에서 제공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킹 카운티 부동산 서비스’에서 소유주의 이름, 거래내역, 세금납부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검찰과 법원도 주 법무부와 주 대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카운티 단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편, 1865년 주 내에 독립법인으로 설립된(incorporated) 시애틀 시 또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규제권한을 행사합니다. 시애틀 시는 세계적인 수준의 소장품을 지닌 미술관과 지역 예술가를 후원하기 위한 아트 펀드와 미술관을 운영하며, 킹 카운티 도서관들과 별개로 독자적인 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해두고 있습니다. 다운타운의 중심에서 수려한 외관을 자랑하는 시애틀 공공 도서관(Seattle Public Library)과 "SAM"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시애틀 아트 뮤지엄(Seattle Art Museum)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시애틀 시는 SPD라고 불리는 경찰국(Seattle Police Department)을 운영하며, 최근에는 설탕이 든 음료 1온스당 1.75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설탕이 든 탄산음료를 사려는 사람들은 차를 타고 벨뷰까지 가기도 합니다.

저는 특히 시애틀, 벨뷰는 물론, 인구 3천 명의 메디어나까지 독립된 경찰국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이런 지역 경찰조직이 전국으로 보면 자그마치 18,000개라고 하는데,<sup>2)</sup> 경찰청이라는 단일 조직에 전국 경찰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면, 사당동과 방배동에 각각 서로 다른 제복을 입은 경찰이 있고, 동

2) King County. (2019). *Police Partnerships*. Retrieved from <https://kingcounty.gov/depts/sheriff/police-partnerships.aspx>



< 워싱턴 주 킹 카운티의 도서관과 경찰국 >

킹 카운티 내의 도시 중 규모가 큰 시애틀만 고유한 도서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국은 거의 모든 도시가 독립적으로 운영합니다.

주민이 선출한 대표가 경찰국장을 임명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배동 인구만 해도 메디아나의 40배인 12만 명이니까요. 한국에서도 미국과 유사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였습시다만, 지역 간 범집행의 불균형, 선출직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경찰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sup>3)</sup> 그렇다면 왜 미국은 경찰을 이렇게 작은 단위로 운영해 온 것일까요? 용의자를 검거하기에도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3) 2021년 7월 1일 시행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라 경찰 12만 명 중 6만8천 명이 자치경찰로 근무하며 시·도지사의 업무 지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도 경찰청장의 통솔 하에 '국가직'으로 근무하며 예산도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지자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지역세수로 경찰급여를 지급하는 미국과는 차이가 크다고 보입니다.

##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권한 배분

미국의 수정헌법 제2조(Second Amendment)<sup>4)</sup>는 연방이 주의 자위권을 침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정헌법 제10조(Tenth Amendment)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연방이 아닌 주에 전속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방, 조약체결, 우편, 특허 등 제한된 영역만을 연방 사무로 정하고 있으며, 법원에서 대표적으로 주의 고유한 사무로 인정해온 영역이 바로 ‘경찰권’입니다. 경찰권이란, 지역 사회의 위험을 방지하고 범죄

---

4) ‘수정헌법’이라는 용어가 다소 혼동을 야기할 수 있기에 설명을 추가합니다. 영국과의 독립 전쟁에서 승리한 13개 주는 어떻게 미국 연방정부를 구성할지에 대해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였습니다. 유명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이 등장하는 시기로, 모든 주가 단일한 ‘달려화’를 쓰는 것에도 동의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13개 주는 1788년 의회, 행정부, 사법부의 권력구조에 관한 내용을 담은 헌법을 비준합니다. 그 후, 1791년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내용을 ‘수정헌법(Amendment)’이라는 이름으로 뒤에 추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수정헌법은 제27조까지 제정되어 있으며, 1791년에 마련된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를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라고 부릅니다.

를 수사하는 권한인데요, 역대 대통령들이 총기규제 필요성을 역설했음에도 연방의회가 강력한 법률을 제정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총기규제는 원칙적으로 주의 경찰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sup>5)</sup>

그리고 이 막강한 경찰권은 각 주 헌법에 따라 더 작은 기초단체에 위임되곤 합니다. 워싱턴 주 헌법 제11항 제11조(Article XI, Section 11)도 카운티, 시티, 타운 등 기초단체에게 지역 경찰권(local police)을 집행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sup>6)</sup> 이는 ‘나 자신은 내가 지킨다’ 내지는 ‘멀리 있는 정부를 믿지 않는다’라는 미국의 헌법이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지키면서 메이플라워 호를 뒀던 사람들의 후예인 미국인들은

5) 연방대법원은 *United States v. Lopez*, 514 U.S. 549 (1995) 판결에서 학교에 총기를 들고 오지 못하도록 규정한 연방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총기규제를 지지하는 사람들, 특히 학교 총기난사 참사에 경각심을 느끼던 시민들은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개인의 총기소지권이 공공의 안전보다 우선하느냐’가 문제된 것이 아니라 ‘총기규제가 연방의회의 관할인지’가 주된 논의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버드 로스쿨의 Lawrence Lessig 교수 등은 헌법 문구에 반하는, 과도한 연방주의를 지양해야 한다며 이 판결의 입장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6) The Washington State Constitution Article XI, Section 11: “Police and Sanitary Regulations. Any county, city, town or township may make and enforce within its limits all such local police, sanitary and other regulations as are not in conflict with general laws.”

영국의 오랜 식민지배에 대한 기억까지 겹쳐져서 국가의 권력에 대해 개인  
의 삶의 영역을 보호하는 것을 중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연방정부가 단일한 주민등록제도를 만드는 것에도,  
백신접종 등의 건강정보를 하나로 모아 관리하는 것에도, 강력한 연방경찰  
을 설립하는 것에도 반대합니다. 체계의 효율성, 정확성, 통일성보다는 비효  
율적이고 혼란스럽더라도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위권을 실현하기를 희망하  
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찰사무  
는 나와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지역사회에서 직접 운영해야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은 ‘경찰이 중요해서’ 국가직으로 운영하고 미국도 ‘경찰이  
중요해서’ 지방직으로 운영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사  
법 엘리트인 판사에게 생사여탈권을 맡기기보다 지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  
들의 판단을 받기를 원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  
로 워싱턴 주는 판사도 선거로 선출합니다.

## ■ 주민 1,000명이 모이면 ‘도시’를 설립할 수 있다

이러한 자치이념의 정점은 주민의 의사에 따라 ‘시 정부’를 설립할 수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워싱턴 주 헌법에 따르면, 도시는 1,000명 이상의 주민이 모이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주민의 50% 이상의 동의 를 구하는 주민투표를 한 후 카운티가 승인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실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도시 예정지 부동산(properties) 중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신청서를 접수한 후, 카운티가 이를 승인 하면, 전체 토지(acreage)와 부동산의 60%에 달하는 소유주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sup>7)</sup> 주민들이 모여 정부를 결성하는 것도 신기하지만 이 표결권을 부동산 가치에 따라 정하는 것은 정말 생경합니다.

호기심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광역시·도와 기초지자체를 설립하는지

7) King County. (2020). *Annexation and Incorporation Process*. Retrieved from <https://kingcounty.gov>

찾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세종특별자치시'의 사례처럼 새로운 지방자치 단체를 설립하려면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면’이 ‘읍’이 되려면 2만 명 이상이 되어야 하며, ‘시’가 되려면 15만 명 이상이어야 하고, 50만 명 이상의 ‘시’는 ‘도’의 사무 중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의 경계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단 1천 명이 모여 시 정부를 설립하고, 시장과 의회의 선출방식을 정하며, 자치경찰을 운영하고, 세금도 징수할 수 있는 미국은 참 다른 세상입니다.

## 기업이 설립한 도시는 공적인 공간일까

이런 민간주도형(?) 지방자치제도 덕분에 미국에서는 ‘기업타운(company town)’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한 지역의 부동산을 대부분 소유하고 지방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타운은, 다수의 공장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제조업과 함께 부흥했다가 현재는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네바다 주지사가 테크기업을 유치해 낙후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이 지방정부를 설립할 경우 조세를 부과하고 교육청과 법원(!)을 운영하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했다고 하네요.<sup>8)</sup> 언젠가 테슬라 고등학교와 애플 법원을 보게 되는 날이 올까요? 만일 기업이 모든 재산을 소유하고 정부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지역은 공공

8) Associated Press. (February 3, 2021). Nevada bill would allow tech companies to create governments. *Associated Press*. Retrieved from <https://apnews.com/article/legislature-legislation-local-governments-nevada-economy-2fa79128a7bf41073c1e9102e8a0e5f0>

재일까요, 아니면 사유재일까요?

이 문제를 다룬 것이 *Marsh v. Alabama*<sup>9)</sup> 사건입니다. 당시 앨라배마 주 Chickasaw라는 타운은 Gulf Shipbuilding Corporation이 소유하고, 보안 등의 월급도 Gulf 기업이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와의 증인’ 신자인 Marsh라는 분이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거리에서 종교 팜플릿을 나누어주자, 보안관이 사유재산 침입으로 체포를 하였습니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에 따라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두텁게 보장되며, 누구나 공유지 위에서 복음전파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라크전에서 죽은 군인의 장례식장 부근에서 “이라크전 전사자들은 하느님이 벌하신 것” 같은 팻말을 들고 반전운동을 하는 것도 허용될 정도이니깐요.<sup>10)</sup> 따라서 Marsh는 모두가 다니는 거리에서 종교활동을 하던 자신을 체포한 것은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Marsh는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승소합니다. 연방대법관 5명은 아무리 기업이 소유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공공에게 제공된 이상 자택과 같은 사유재산

---

9) *Marsh v. Alabama*, 326 U.S. 501 (1946).

10) *Snyder v. Phelps*, 562 U.S. 443 (2011).

으로 볼 수는 없으며,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기업의 소유권에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결론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Marsh가 백화점에서 팜플릿을 나누어주다가 제지를 당했다면 어떨까요? 또는 누구든 가입을 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에서 특정 종교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포스팅을 올리다가 계정이 차단되었다면 어떨까요?

이 문제는 ‘어디까지가 공공의 공간인가’라는 어려운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는 ‘공간의 공공성’을 논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이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를 당했을 때 그것이 ‘국가 행위’(state action)로 인한 것(여기에서 국가는 연방과 주, 기초단체를 모두 포함합니다)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연방법원이 관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 모두가 다니는 백화점과 인터넷은 공적인 공간일까

앞서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백화점’의 경우는 한 때 대법원이 Marsh 판결과 유사하게 ‘공적 공간(public square)’이라는 식으로 결정을 하였으나,<sup>11)</sup> 몇 년 후에 번복을 하였습니다.<sup>12)</sup> 반면, ‘인터넷 웹사이트’의 경우 여전히 침해한 논쟁의 대상이지만, 현 법원의 입장은 ‘기업의 사적 공간’이라는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2019년 Halleck 판결에서 케이블에서 제공되던 민영 공익 채널이 단순히 ‘의견공유의 장(forum of speech)’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각 개인이 헌법에 따라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공적 공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sup>13)</sup> 그리고 연방 제9

11) *Amalgamated Fod Emps. Union Local 590 v. Logan Valey Plaza, Inc.*, 391 U.S. 308 (1968).

12) *Lloyd Corp. v. Taner*, 407 U.S. 51, 570 (1972).

13) *Manhattan Cmty. Access Corp. v. Halleck*, 139 S. Ct. 1921 (2019).

항소법원(우리나라의 고등법원 급입니다)은 Halleck 판결을 인용하면서, 유튜브(YouTube)가 기업의 사적인 웹사이트일 뿐 ‘공적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Prager University라는 정치단체는(University라는 명칭을 썼지만 대학의 실체가 없는 비영리법인이었다고 합니다) 유튜브가 자신들의 계정에 제재조치를 한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유튜브의 행위를 ‘국가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를 다룰 여지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sup>14)</sup>

반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인터넷의 공공성을 인정하는 듯한 판결도 최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는 성범죄자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사람이 소셜 미디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받았던 Packingham 씨는 자신에게 주정차 위반 티켓을 발부한 카운티 경찰을 비하하는 포스팅을 페이스북에 익명으로 올린 후 경찰당국에 의해 적발되었고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죄로 배심원에 의해 유죄선고를 받게 됩니다. 판결에 불복한 Packingham 씨는 연방대법원까지

---

14) *Prager University v. YouTube, LLC*, No. 18-15712 (9th Cir. Feb. 26, 2020).

가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법원은 Packingham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sup>15)</sup> 소셜미디어가 모든 대중이 향유하는 의사소통 채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률을 제정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취지였습니다.<sup>16)</sup>

더 재미있는 사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서 진보 인사의 댓글달기 기능을 차단한 사건입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 트위터 계정은 ‘공적 공간’일까요, 아니면 트위터의 사유재산일까요? 대통령이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만 댓글을 차단하면 그 사람은 토론의 장에서 부당하게 밀려나는 것이 아닐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하면서 이 사건은 각하되었지만 보수 성향의 Thomas 대법관은 흥미로운 동의의견(concurrence)을 남겼습니다. 그는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 계정을 영구적으로 삭제한 것을 지적하며, 요즘 디지털 플랫폼은 사람들의 의견 교환에 ‘역사상 유례가 없이 집중화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무조건 ‘국가행위가 아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

---

15) *Packingham v. North Carolina*, 137 S. Ct. 1730 (2017).

16) 물론 이 판결에서는 성범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한 '주 법률'이 '국가행위'가 되었다는 점에서, '유튜브의 계정 제재조치'가 '국가행위인가'를 다룬 *Halleck* 판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라 일정한 공적인 규제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sup>17)</sup>

---

17) *Biden v. Knight First Amendment Inst. at Columbia Univ.*, 141 S.Ct. 1220, 1221 (2021).  
“unprecedented ... concentrated control of so much speech in the hands of a few private parties” (*Biden v. Knight First Amendment Inst. at Columbia Univ.*, 141 S.Ct. 1220, 1221 (2021)). Retrieved from <https://perma.cc/BLW5-LEYW>

## ■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

이렇듯 미국 법원이 ‘공적 공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하는 이유는, 한편으로 ‘사적 공간’에 대한 보호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프라이버시’는 앞서 말씀드린 ‘표현의 자유’와 함께 미국법의 핵심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맘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라면, 프라이버시는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니) 나를 제발 건드리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둘 다 개인의 자율성(automy) 실현에 필수적인 요소이지요. 그런데 헌법에 새겨진지 200년이 넘는 표현의 자유와 달리 프라이버시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된지 6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통상 미국은 ‘성문법’(civil law 또는 statutory law) 국가인 우리나라나 유럽과 달리, ‘보통법’(common law) 체계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에서 유래한 보통법은 법률상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법원이 판례를 쌓아가며 구속적인 법리를 만들어 온 전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에서 프라이버시 법제는 학자들이 먼저 제안하고 이후에 판례

로 받아들여진 드문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작은 보스턴 출신의 유명 변호사 워렌(Warren)과 브랜다이스(Brandeis, 브랜다이스는 후에 대법관이 됩니다)가 1895년에 쓴 “The Right to Privacy”라는 논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은 프라이버시 문제가 왜 계약법, 명예훼손, 지적재산권법 등 기존 법제로 충분히 보호되지 않고 있는지를 논증하고, ‘Right to be let alone(내버려 두어질 권리)’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한 법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sup>18)</sup>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을 매우 존경해 일기를 몰래 입수한 후 당신에게 묻지 않고 이를 출판했는데,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인세 전액을 당신에게 주었다고 가정해봅시다. 당신은 명성과 금전적 이익을 얻었지만, 원치 않게 사생활이 만천하에 공개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워렌과 브랜다이스에 따르면 이 경우 지적재산권 법제로는 상황을 바로잡기 어렵다고 합니다.

18) 워렌 변호사가 지역 신문이 자신의 딸의 결혼식 하객 목록을 게재한 것에 화가 나서 이 분야 연구를 해 온 브랜다이스 변호사를 독려해서 논문을 함께 완성하였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논문이 작성되던 때 딸이 7살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틀린 이야기로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자들이 지역 신문의 무단 정보 게재에 불만을 지니고 있는 것은 논문의 여기저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James Barron, *Warren and Brandeis, The Right to Privacy, 4 Harv. L Rev. 193 (1890): Demystifying a Landmark Citation*, 13 *Suffolk U.L. Rev.* 875, 893 (1979).

저작권 침해는 통상 저작권에 상당하는 금액만 지급함으로써 피해를 구제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경우 법원이 ‘출판금지 명령’을 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해야 비로소 다소간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워렌과 브렌다이스는 관련된 계약이나 법률이나 선례가 없더라도 법원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적절한 구제를 제공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후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프라이버시 침해(privacy torts)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주를 넓혀가게 됩니다.

## ■ 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의 탄생

워렌과 브렌다이스는 ‘개인-개인’ 간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다루었을 뿐 ‘국가-개인’의 관계는 예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이 개인이 국가에 대항할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하면서 그 적용 범위가 비약적으로 넓어지게 됩니다. 1965년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의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등을 입체적으로 해석해 ‘개인적인 삶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이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률은 위헌이라는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기존에도 수정헌법 제6조(Sixth Amendment)에 따라 영장 없이 집에 들이닥치거나 몸을 수색하거나 도청을 하는 것 등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집에 들어오지 말아 달라는 수준을 넘어, 국가가 법률을 통해 개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때, ‘이 영역만큼은 삶의 방식을 강요하지 말아 달라’는 철학적인 항변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법원이 개인적 삶에 대한 존중을 법 원칙으로 채택함으로써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인정하는 일련의

판결이 등장하게 됩니다.

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은 피임약 판매를 금지한 코네티컷 주법에 대한 위헌 선언 판결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sup>19)</sup> 1873년에 제정된 코네티컷 주법은 피임약 사용을 벌금 또는 60일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1940년대부터 이 법률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그 법에 근거해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sup>20)</sup> 이에 Planned Parenthood League라는 시민단체의 Griswold 씨는 뉴헤이븐(New Haven) 지역에 클리닉을 개설해 공개적으로 피임약을 제공하였고, 체포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Griswold 씨는 기다렸다는 듯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대법원은 코네티컷 주법이 “결혼생활의 프라이버시(marital privacy)”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결혼제도는 미국 건

---

19) *Griswold v. Connecticut*, 381 U.S. 479 (1965).

20) *Tileston v. Ullman*, 318 U.S. 44 (1943), *Poe v. Ullman*, 367 U.S. 497 (1961) 판결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대법원까지 올라오는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두 심리를 하여 승소, 패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년 1만 5천건의 사건을 다룬다고 합니다. 반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1만 여 개의 사건 중 정말 중요한 헌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거나, 또는 하급법원 간 해석에 이견이 커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 70~80개에 대해서만 소송을 허가(certiorari)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대법관은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심정으로 논문에 준하는 판결문을 씁니다.

국 이전부터 존재해 온 인류의 전통이자 신성할 만큼의 내밀성(intimate to the degree of being sacred)이 보장되는 영역이므로, 국가가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렇다면 결혼한 커플만이 프라이버시가 있는 걸까요? Griswold 사건이 있고 7년 후, 연방대법원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피임약을 살 자유가 있다고 판결합니다.<sup>21)</sup> 시민운동가 Baird 씨는 보스톤 대학교에서 강의를 마친 후 학생들에게 피임관련 물품을 배부하였고, 결혼한 커플에게만 피임약을 팔 수 있도록 한 메사추세츠 주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당시 메사추세츠 주는 비혼 상태의 남녀가 피임약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혼외 정사가 증가해 결혼의 신성성을 해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결혼의 신성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치 않는 아기를 강제로 가지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아기를 갖는 개인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sup>22)</sup>

21) *Eisenstadt v. Baird*, 405 U.S. 438 (1972).

22) 이후 법원은 16세 이하의 청소년이 피임약을 사는 것도 프라이버시권에 의해 보호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Carey v. Population Services International*, 431 U.S. 678 (1977).



## 낙태권도 프라이버시 영역에 속하는가

그렇다면 아기를 갖는 의사결정은 무조건 개인의 프라이버시 영역일까요? 이는 ‘낙태’에 대한 어려운 논의로 이어집니다. 이미 생긴 아기를 수술로 없애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부모가 아기를 낳을지 결정할 권리(reproductive rights)를 존중하는 사람들(pro-choice)과 아이의 생명을 중시하는 입장(pro-life)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1978년 Roe v. Wade 판결에서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주 법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Roe 씨(가명)를 대리한 변호인단도 예상치 못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법원은 아이를 갖는 의사결정은 여성의 프라이버시 영역에 속하고, 이는 수정헌법 제14조(Fourteenth Amendment)에 의해 보호되는 적법절차의 권리(due process rights) 중 하나라고 천명하였습니다. 적법절차의 권리란 국가가 원칙적으로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중대한 기본권으로, 국가가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려면 압도적인 공익적 사유(compelling government interest)를 입증해야 한



## ■ 동성애는 프라이버시 영역에 속하는가

피임과 낙태에 관한 문제 외에, 프라이버시권은 인종차별과 동성애 영역에서도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만약 가정을 이루는 것이 헌법상 보호되는 ‘내밀한 의사결정’의 영역이라면 ‘누구’와 결혼을 할지도 개인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Obergefell v. Hodges(2015) 판결은 백악관부터 소셜 미디어까지 미국 전역을 온통 무지갯빛으로 물들였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기존에 동성 간 결혼은 각 주마다 규율이 달랐는데, 보수적 성향의 주 의회가 동성혼을 금지하면 진보 성향의 주 법원이 그 법률을 폐지하기도 하고, 반대로 주 의회가 허용하면 주 법원이 폐지하기도 하는 등 전국적으로 혼란이 일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주 법원에 계류된 6개의 소송이 합쳐져 대법원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법관은 보수 성향 5명, 진보 성향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보수 성향의 Anthony Kennedy 대법관이 의외의 표를 던지면서 동성 간의 결혼이 적법절차 원리(Due Process Clause)와 평등원칙(Equal Protection

Clause)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fundamental rights)이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금지하는 주 법률은 위헌이라는, 명확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워싱턴 주는 2012년에 동성혼을 합법화하였고, 2년 전에는 주 민등록증에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요즘에는 언어문화에서 he/she의 구분을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영어가 성의 구분을 불필요하게 강조해 성차별을 강화해왔고, 성전환자 등 제3의 성을 지닌 사람들에게 일도양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취지입니다. 저는 행사에 참여할 때마다 ‘자신이 원하는 대명사가 무엇인지’를 묻는 칸에 답을 했는데요, 제 외모와 관계 없이 he/him, she/her, they/them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발간하는 법학저널인 Washington Law Review에서는 3인칭 동사와 어울리지 않는 they를 대신해 zie/zer라는 단수 대명사를 쓸 것을 권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감수성이 발달한 요즘엔 상상하기가 어렵지만, 불과 20년 전에는 동성 간 성교가 ‘범죄인’ 주도 있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2003년 Lawrence v. Texas 판결에서 동성 간 성교(intercourse)를 금하는 텍사스 주의 Sodomy law를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Lawrence씨는 자신의 집 안에서 동성 남자친구 Garner씨와 성행위를 하던 중, Garner씨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불법 무기소지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안관이 성행위 장면을 목격, Sodomy

law 위반으로 체포된 후 유죄선고를 받았습니다. Lawrence 씨는 인권변호사단체인 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조력을 받아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프라이버시 영역에 속하므로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sup>25)</sup>

---

25) *Lawrence v. Texas*, 539 U.S. 558 (2003). Sodomy는 본래 ‘수간’을 의미하는 것인데, 동성애 성행위 금지법을 이르는 용어로 사용했던 것을 보면, 당시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 ■ 또 다른 무기: 평등원칙

프라이버시권과 함께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른 ‘평등권’(equal protection)도 소수자 차별금지를 위해 종종 활용되는 논거입니다. 최근 개봉한 독립영화 중 ‘Loving’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다른 인종 간의 결혼’을 ‘범죄’로 규정 한 버지니아 주법에 대항하여 사랑을 지키기 위해 투쟁한 Loving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sup>26)</sup> Loving 씨 부부는 워싱턴 DC에서 결혼을 하고 버지니아 주에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 아닌 밤중에 경찰에게 체포를 당하고 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결국 버지니아 주에서는 살 수 없게 되어 다른 주에서 살고 있던 차에, 마침 인종차별 사건의 원고를 찾던 ACLU의 변호사가 이 부부를 설득하여 대법원으로 사건을 가져가는 내용입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단순히 법률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26) *Loving v. Virginia*, 388 U.S. 1 (1967).



< Loving v. Virginia 판결의 주인공인 Loving 부부 >

‘Loving’ 영화 중 한 장면을 보고 그린 것입니다. 내용도 따뜻하거니와, 미국법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영화이므로 시간되실 때 감상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기할 수는 없고, 반드시 구체적으로 이익을 침해당한 누군가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피임약 교부 사건에서 시민단체가 유죄선고를 받기 위해 직접 클리닉을 열었던 것처럼, 미국에서는 ACLU 등 인권운동 단체들이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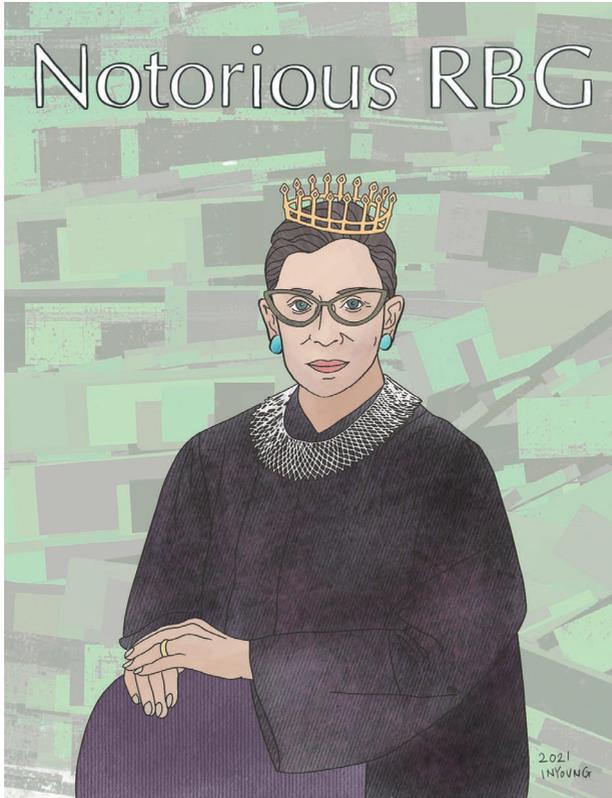
를 본 사람을 찾아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할테니 원고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대법원 판례를 바꾸는 일이 인권 신장에 크게 기여하는 일이자, 시민단체의 명예를 높이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흑인 대법관인 Thurgood Marshall은 ‘인종 분리 교육’이 위헌이라고 선언한 *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인권운동가였습니다.<sup>27)</sup> 1896년 연방대법원은 *Plessy*라는 판결에서 공공서비스의 수준이 동일하다면 인종으로 분리를 해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separate but equal” 원칙을 정했었는데요.<sup>28)</sup> 이 판결은 공립학교에서 ‘백인 교실,’ ‘흑인 교실’을 나누는 참담한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비로소 *Brown* 판결에서 대법원은 대법관 만장일치로 ‘인종에 기초한 차별’은 압도적인 공익적 사유가 없는 한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른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는 원칙을 정립하게 됩니다. 지금은 당연해 보이지만, 당시에는 남부지역이 이 판결에 불복해 시민 간에 심각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군대를 파견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

27) *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347 U.S. 483 (1954).

28) *Plessy v. Ferguson*, 163 U.S. 537 (1896).



### <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 >

'Notorious RBG'는 긴스버그 대법관 평전의 제목입니다. 한 로스쿨 학생이 'Notorious B.I.G.'라는 랩 음악에서 따와 이름 붙인 것으로, 인권변호사이자 대법관으로서 논리정연하고 깨끗하게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의견을 관철해 온 모습을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 돌아가신 Ruth Bader Ginsburg 대법관도 ACLU 변호사로서 백인 남성 중심의 법조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인물이었습니다. 검은 법복 위에 특유의 칼라 장식을 올려 스타일 아이콘으로 등극하기도 했지요. 그는 1972년 ACLU에 ‘여권 신장 프로젝트팀’을 만들었고, 1973년 *Frontiero* 사건에서 여성 군인과 남성 군인에게 서로 다른 복지혜택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성별에 기초한 부당한 차별’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sup>29)</sup> 당시, 남성 군인은 부인에 대한 설명 없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던 반면, 여군은 남편의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다고 합니다. 깐스버그는 같은 논리적 기초 위에서 남성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배우자의 사망 후 아이를 단독 양육하게 되었을 때 사회보장 혜택이 남편을 잃은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통해 부인을 잃은 남성들도 똑같이 수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sup>30)</sup>

1960~1970년대 일련의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프라이버시권 또는 평등원칙 위반 논거에 기해 다양성을 억압하는 법률을 폐지해 나갔습니다. 이제 법

29) *Frontiero v. Richardson*, 411 U.S. 677 (1973).

30) *Weinberger v. Wiesenfeld*, 420 U.S. 636 (1975).

원은 인종, 성별, 성적체성에 기반한 차별적 대우는 일단 모두 ‘의심스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정부기관이 압도적 공익적 요청에 따라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헌법 위반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종류의 차별에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도화된 자본주의 국가 답게 ‘부’로 인해 차별이 생기는 경우에는 엄격심사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Rodriguez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세금이 많이 걷히는 지역의 공립학교는 부유해지고, 가난한 지역의 공립학교는 더욱 열악해지도록 예산구조가 짜여져 있더라도, 주 정부가 재정여력 등 합리적 근거를 댈 수 있다면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sup>31)</sup> 이는 교육받을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풍경입니다.<sup>32)</sup>

---

31) *San Antonio Independent School District v. Rodriguez*, 411 U.S. 1 (1973).

32) *Gary B. v. Whitmer*, 957 F.3d 616 (6th Cir. 2020). *Gary B.* 사건은 최근 연방항소법원에서 다루어진 디트로이트 공립학교 사건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고 난방 시스템도 없으며, 선생님을 고용할 예산이 없어서 8학년 학생이 7학년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항소법원은 미시간 주가 디트로이트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나, 아직 대법원은 교육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어떻게 하면 조화로운 질서를 찾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플로리다의 무너진 건물에서 시작해서 미국인들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정부조직을 구축해 놓았는지, 왜 먼 연방정부보다 가까운 지방정부를 더 신뢰하는지, 어떻게 타인으로부터 침범받지 않는 개인의 공간을 구축해 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 공간에 대한 관념이 유색인종과 성소수자의 권리 증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의 제목은 10년 전에 읽었던 ‘정치학으로의 산책’(21세기 정치연구회 엮음, 한울, 제2개정판)에서 따온 것입니다. 당시 여러 명의 저자들이 정치철학부터 세계정치까지 어려운 내용을 쉽고 재미있고 일관된 어조로 서술한 것에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미국법의 복잡하고 난해한 판례 뒤에 숨어 있는, 삶 속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가고 싶었습니다만, 의도한 만큼 편안하게 읽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면서 개인의 역할과 국가관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과 너무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매일 놀랍니다.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

으로 남의 맘은 내 맘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올바른 결론’을 찾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비교적 조화로운 결론을 찾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미국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를 먼저 걱정합니다. 이러한 ‘내 갈 길 간다’는 태도는 다양한 인격과 사유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것이 법제화되면서 동성애를 범죄시하던 나라가 20년 만에 동성애자의 결혼권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적 공간을 넓게 인정하면 할 수록 공공 영역이 위축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일례로, 연방대법원은 개인의 종교적 자유가 정부의 의무교육제도의 공익적 목적보다 우선하므로, 부모가 종교적인 이유로 자녀를 공립학교에서 퇴학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sup>33)</sup> 이러한 부모의 극단적인 사례는 Tara Westover의 『Educated』라는 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자의 부모는 정부를 극도로 불신하여 자녀의 출생등록을 하지 않고, 학교는 물론 병원에도 보내지 않으며, 자동차 등록, 보험가입, 게다가 안전벨트

---

33) *Wisconsin v. Yoder*, 406 U.S. 205 (1972).

착용 의무까지 거부해 불안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양육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연방대법원은 국가가 침해할 수 없는 개인적 권리의 범위에 성 정체성이나 임신여부를 결정할 권리 뿐 아니라, ‘총기소지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sup>34)</sup> 대법원이 이러한 입장에 있는 이상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총기규제를 외쳐도 연방이든 주든 총기소지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입법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1920년대에는 기본권의 영역에 ‘여성과 아동이 최저임금 이하를 받을 권리’나 ‘제빵 노동자가 주 60시간을 넘어서 노동할 권리’까지 포함함으로써 국가가 아동노동과 약탈적 임금을 규제하는 것을 법원이 금지하기도 했으니<sup>35)</sup> 이는 개인적 공간을 넓히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34) *District of Columbia v. Heller*, 554 U.S. 570 (2008); *McDonald v. Chicago*, 561 U.S. 742 (2010). 연방대법원은 경찰권을 지닌 주 정부도 총기를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종래 ‘연방에 대해 주 정부가 스스로 군대를 조직할 권리로 이해되어 왔던 수정 헌법 제2조를 확대 해석해 각 개인이 자신의 집을 지키기 위해 총기를 소지하여 무장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35) *Adkins v. Children's Hospital*, 261 U.S. 525 (1923); *Lochner v. New York*, 198 U.S. 45 (1905). 이 판결들은 보수적 성향의 대법원과 대공황 이후 국가에 의한 경기부양을 시도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강력하게 대처한 이후, 대법원이 다소 진보적인 성향의 판결을 하기 시작하면서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가지런하게 잘 조직된 사회입니다. 길고 지루한 토론을 이어가기보다는 명확한 결정권자가 올바른 답변을 내리기를 바라고, 공익적으로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 침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적인 공간에 비해 공적인 공간이 크기 때문에 공공보험, 공교육, 주거지원 등 사회안전망도 촘촘한 편입니다만, 이런 가지런함 속에서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개인들은 자칫 '모난 돌'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외도한 배우자를 경찰이 체포하거나 결혼을 이성 간의 결합으로 한정하는 것은 '정상 가족'에 대한 신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개인이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인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 지당한 과제처럼 들립니다만 이를 실현하는 것은, 미국의 복잡다단한 발전사가 보여 주듯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인격'이 무엇인지,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다투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사회가 각 개인의 고유한 삶의 영역을 인정하고, 언뜻 화해되기 어려워 보이는 견해들을 경청해 줄 여유가 있는 공간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삶의 가치와 희로애락이 사회제도와 조응해나갈

때 ‘모든 삶이 삶으로서 존중받는 사회’에 한층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 류아정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석사과정생. 잊혀진 역사, 지워지는 삶을 기록하고 꺾는 작업을 좋아한다. 탈식민주의, 인종주의, 이주난민성, 젠더-섹슈얼리티, 생태주의, 트라우마의 문제와 이런 문제들이 경험되고 기입되는 '몸'의 현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을 만나고 충분히 대화하는 것의 힘을 믿는다.

### 정인영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으로 미디어 규제와 콘텐츠 진흥 업무를 수행하다가, 현재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워싱턴주립대 로스쿨 박사과정(Ph.D.)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홍익대학교에서 예술학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법(석사)을 전공하였다.

## Diversitas List

**1호** 진화는 진보가 아니라 다양성의 증가입니다 \_ 이정모  
고정관념은 정확할수록 문제다 \_ 허태균

**2호**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젠더 평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다 \_ 김홍탁  
인공지능의 윤리학: 차별적 위계가 아닌 다양성의  
알고리즘을 꿈꾸며 \_ 신혜린

**3호** 다양성, 차이 그리고 차별 \_ 박경태  
효율적 삶의 피안(彼岸) \_ 배종훈

**4호** 다양하지 않음에 질문을 던지다 \_ 윤석원  
인구 변동과 다양성 \_ 최슬기

**5호** 과학기술은 왜 더 많은 여성을 필요로 하는가 \_ 원소연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습 장면 만들기 \_ 이보라

**6호** 혁신의 산실, 실리콘밸리의 기업 사례들로 살펴보는  
다양성의 6하 원칙 \_ 박은연  
기형, 추함, 버림받음-프링켄슈타인의 괴물 \_ 노애경

**7호** 종교적 다양성에 관하여: 종교적 원관은  
불법법칙인가, 가법법칙인가? \_ 서형원  
한국 교육에서 '다양화'의 이중적 함의 \_ 전대원

**8호** 타이포그래피와 다양성 \_ 유지원  
한국어에 숨은 가장 일상적인 차별 \_ 신재영

**9호** 다양성의 물리학 \_ 김범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돌봄국가 \_ 김희광

**10호** 다양성의 가치로 풀이한 가능성  
연구생태계에서 다양성이 가지는 의미 \_ 노정혜  
극장은 다양성의 산물  
세계 극장사에서 발견한 다양성의 가치 \_ 박동우

**11호** 한국 스포츠, 국가주의와 가족주의를 넘어서 \_ 정윤수  
성소수자의 권리 TV가 재현하는 성소수자 \_ 박지훈

**12호** 있는 그대로 살아도 괜찮은 세상을 꿈꾸며 \_ 민지영  
왜 탄탄대로에는 다양성이 없을까? \_ 양희연

**13호** 영화의 다양성, 영화의 다양한 시선들 \_ 이대현  
어디자영의 장자(莊子) 제물론(齊物論) 읽기 \_ 김지형



## Diversitas

**권호** 14호  
**발행일** 2021년 7월 15일  
**발행처**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diversity.korea.ac.kr  
**디자인·편집** 사이시옷

※ 이 저술은 교육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지원 받아 발간되었음

